

건설교통부, 개정 운영기준 고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일반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시공을 담당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도급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건설 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일반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도급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을 경우 일반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는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도록 했다.

또 주계약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금을 주계약자의 계좌로 일괄 입금토록 하고 공동도급자는 주계약자에게 적극 협력해야 하는 협조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공동수급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계약자가 중도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나 잔존 구성원이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4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해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이 기준은 민간공사에 한해 적

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공공공사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공동도급운영요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재정부에 회계예규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81호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 계

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서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

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의거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

지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주계약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제3항제3호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공동도급 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일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①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

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 계약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

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2.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제15조(보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소재지:)
2. ○○○회사(대표: ,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

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런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나) ○○○건설회사:건축공사

2. 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

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

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별표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와 다른 구성원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표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가 된다.

-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사(대표: , 소재지:)
- 2. ○○○회사(대표: ,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없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
주 ○○○

2. ○○○회사:○○은행, 계
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토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전체공
사 종합관리 및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건축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전체공
사 종합관리 및 건축공사

나) ○○○설비회사:설비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
한 공동의 비용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전체공사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
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
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
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
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
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
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
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
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
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
며,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 등 당해 계
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
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
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
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
약자는 해당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
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
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
는 제9조의 분담내용에 따라 구
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계약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
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
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이 협정에 의하
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
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구성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
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
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18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

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잠열축열식
냉·난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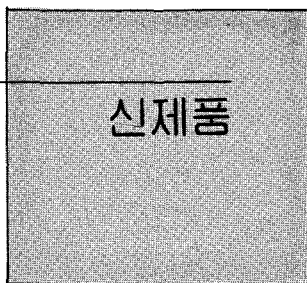
심야전력 이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근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해 냉·난방장치를 가동하는 「잠열축열식 일체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낮시간대 전기요금에 비해 4분의1 수준인 심야전력을 이용해 잠열재에 열을 축적했다가 이 열을 낮시간대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열과 냉기를 소형모듈에 함께 저장할 수 있어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냉·난방을 따로 실시하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가동률이 높아 2년안에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시공간편·차음성 우수

시공성과 단열성이 뛰어난 한국형 건식 온돌시스템이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주)엘앤제이(대표 조용문)는 최근 한국 고유의 전통 온돌을 현대적인 건축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건식 온돌난방시스템 「이너구들(inner goodle)」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된 건식 온돌난방시스템은 건축자재의 표준화 규격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건축공법의 부품화·조립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 시스템은 1mm두께의 열반사 차음재, 25~60mm의 지지를 단열재, 온수 파이프, 2mm의 열확산판 차음재, 10mm의 맥반석 황토상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은 단열성능과 축열성, 차음성, 시공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0평형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일반 습식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을 3~4일에서 1일로, 투입인력도 12명에서 3명으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인 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한데다 절단 가공 등 현장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비난방시에도 습기나 냉기가 없으며 건축폐기물이 적게 나와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시스템의 시공은 바닥고르기-열반사 차음재 깔기-지지틀 작업-열확산판 차음재 깔기-배관작업-상판깔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